

# 용역계약서

계약번호 : 제 0000000-P000 호

계약건명	범농협 홈페이지 2.0 대량 이관 및 포탈 홈페이지 구축
계약금액	금원정(₩0.-), 부가가치세포함
계약보증금액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하자보증금액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 / 1000
계약기간	계약일부 6개월 (2000. 00. 00. ~ 2000. 00. 00.)
기타사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불임의 계약서류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불임 서류 : 1. 산출내역서  
2. 과업지침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계약특수조건  
5. 최종견적서

년 월 일

계약담당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매현로 24, 2층(양재동, 양재전산센터)  
상 호 : 주식회사 농협정보시스템  
대 표 자 : 대표이사 도 기 윤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

[www.nonghyupit.com](http://www.nonghyupit.com) (윤리경영> 청렴계약제도> 이의제기신고방) 및 전화 (02-3497-2931)

붙임 1.

## 산출내역서

(단위 : M/M, 원/부가세포함)

구분	기술자등급	투입공수	단가	금액
용역				
합계		0	0	0

구분	지급 조건	지급 금액
선금 1차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후	100
	계약금액의 00%	
선금 2차	분석 및 설계단계 승인 후	100
	선금 1차 금액을 제외한 잔금의 00%	
잔금	용역수행 완료 승인 후	100
	잔여 금액의 100%	
합계		300

붙임 2.

## 과업지침서

구분	업무	개발내용	비고

**붙임 3.**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발주한 (주)농협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계약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 또는 과업지침서(이하 통틀어 “과업지침서”라 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당해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지침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요구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요구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7.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과업지침서에 따른 기본업무,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에 따라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관련되어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관련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산출물 등으로 이 계약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을 모두 일컫는다.

**제3조(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침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포함) 등은 상대방의 승낙문서에 의해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계약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 “증권”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 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게 귀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제1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계약담당자로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당해 계약업무의 수행 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 시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또는 점검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지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용역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과 이행범위에 비추어 이질적인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요구를 할 수는 없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지침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담당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과업내용의 단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 계약단가 " 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과업내용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⑤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4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전쟁,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7.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기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5조제3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기를 요청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기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기청구를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기하였을 경우 동 연기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 ②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손해배상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배상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모든 지식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기성대가의 지급)** 용역수행 완수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가의 지급)** 본조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본조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증액·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해당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 제2항의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역업무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도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따로 주

장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일정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계산착오, 오기 등을 이유로 용역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총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증권)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증권)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 통틀어 “농협”이라고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을 변경, 연기 또는 연장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될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제29조 제2항 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88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계약체결제한사유”라고 한다)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계약의 체결이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체결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향후 계약담당자와의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계약체결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통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이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

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도 있다. 다만, 공개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원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계약담당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책임을 진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전 또는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라도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적절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 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행한 특별교육의 실시 확인을 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작업 수행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선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참석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다만 일시, 간헐적 용역은 제외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사업에 행해지는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대책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⑧ 계약상대자는 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조의 조치의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붙임 4.**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정의)** ① 이 조건은 당해 계약과 관련된 특약사항으로서 이 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며,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침서”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계약의 이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 삭제**

**제3조(청렴의무준수)**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품질보증 방안, 위험관리방안, 역할분담에 따른 계약담당자 협조사항 등)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하자보수 등)** ① 하자보수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날(이하 “검수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이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오류에 대한 수정, 장애조치 및 성능저하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후의 유지보수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에 대한 프로그램 오류, 성능저하 등 하자(장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 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의 일부변경 등으로 계약목적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대가의 지불 여부 및 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급한 계약목적물이 정상적으로 가동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한 비상조치는 계약담당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가 통보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전담 엔지니어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⑥ 장애조치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제5항에 따른 장애조치 완료시간 기준부터 지체된 30분당 하자보증금에 1/35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거나 하자보증금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부터 확보한 각종 채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지체시간 산정 시 30분 미만 단위는 30분으로 간주한다.

**제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당해 지역 결제 가능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보증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검수완료일 이후 본 계약의 최종 대가지급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 종료일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에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③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이 계약담당자에 귀속할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①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성된 데이터, 소스코드, 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구성 요소에 포함된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모든 지식재산권은 계약담당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 계약 이전에 확립된 계약 당사자 일방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 ②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사용되거나 구성된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구성요소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이 이 계약 이전에 확립된 제3자의 소유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이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담당자가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지급 청구를 당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의 비용으로 그 처리를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계약 체결 또는 계약목적물을 공급할 당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시 방법 미흡, 권리 귀속 관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율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될 수 있다.
- ⑤ 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으로 인한 개작, 기능추가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추가물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하 "추가물품"이라 함)를 선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에 공급하는 추가물품 및 대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교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상대자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한 근로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개별적 역량, 자격, 기술과 관계없는 영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 교체 시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교체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저하, 일정지연 등이 발생할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계획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의 감독기관이 계약담당자를 감사 또는 검사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계약수행 중이나 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감독 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발생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 관련 법규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14조의2(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 중 하수급인이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그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본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으로 하도급 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수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완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보보호 요구사항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계약담당자의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체결자격이 제한된다.
- ② 계약담당자가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누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가 소유하거나 관계사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③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2항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따라 제3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하도급계약서에는 본조에서 정한 사항과 제13조의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계약담당자의 각종 내부 자료, 업무상 비밀, 법령상 유출이 금지된 정보 및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에정액)** ①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 완료, 계약의 해지(일부해지 포함) 및 해제 등과 관련 없이 본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입찰담합 행위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배상액을 계약담당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장비 및 편의제공)**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집기 등 지정장소의 제반 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제반시설 및 기타 장비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구내식당 등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원은 계약담당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를 본조로 대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을 완료한 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검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아니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 또는 제7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이 계약과 관련되어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받은 과징금
3.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4. 그 밖에 필요한 공제액

⑦ 동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가 발주처로부터 계약을 수주하여 계약상대자에 하도급한 경우, 발주처의 입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 한다.

**제18조2(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2를 본조로 대체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조건 및 사용 등)** ① 대가의 지급조건은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각 단계별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특수조건 제18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 대금을 지급한다.
- ③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을 경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금 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선금액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해당액 이상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잔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이상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PMO 통제)** ①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수행의 원활한 관리 및 지도를 위해 Project Management Office(이하 "PMO"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PMO의 업무담당자는 계약담당자를 대리하여 계약상대자의 당해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관리·지도하고,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요구 및 조치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PMO가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산출물 및 기타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담당자 또는 PMO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PMO가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한 행위 또는 의사표시는 계약담당자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로 본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험처리 및 교육)** 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시험적용일 1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결과표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본적용을 위한 시험합격 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운영자에게 계약목적물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기술이전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시험결과표가 제출되면 계약기일 이전에 검수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술수준이 포함된

검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용역 추진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 제반규정 및 제도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담당자의 직원을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 과정에 참여시켜 추후 계약목적물 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원이 제17조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내지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제23조(기타 업무 지원)** ① 당해 계약의 사업수행과 연계하여 계약담당자가 추진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반영에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부적인 계약의 이행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그 밖의 통지문서, 기술협상 회의록 등에 기재된 바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추가 및 변경 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자의 업무 및 시스템 등 제반 환경 변화로 이 계약의 이행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 ④ 동영상 매체 등을 포함한 사용자 교육용 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작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교재형식, 교육방법, 배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붙임 5.

## 최종견적서